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지난 제72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임.

1. 제안이유

- 조례의 사용 용어중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감량의 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규 삽입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안 제10조)
-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신설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안 제14조)

- 음식물류 폐기물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파주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함(안 별표)

개 정 전(만원)			개 정 후(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10	20	10	20	50
30	50	100	100	300	500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과 본문 중 일부용어를 법령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도점검의 무에 관한 규정을 추가 삽입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조문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 안 제7조에서는 제3호를 신설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으로서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리를 내실화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03. 6. 3. 30일 현재)

- 일반음식점 : 311개소, 집단급식소 : 51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1일 평균)

- 일반음식점(객석면적 200㎡ 이상)

- 휴게음식점(객석면적 100㎡ 이상)

- 대형백화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안 제10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 범위가 확대됨으로서 신규로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사전홍보와 계도를 강화하여 동 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 안 제12조에서는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음.
- 안 제1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을 추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파주생활폐기물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과태료를 인상토록 하였음.

-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용어변경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에 따른 제반신고 사항변경,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설 설치확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위탁업체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협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 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